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2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의회 의장인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06.30.)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제6조)

-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 2회 연임 가능 규정 마련 계획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7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재위촉”을 “2회에 한하여 재위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의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 ---------- --------- 2회에 한하여 재위촉 ----------. --- ---------- ----------.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